

직제규정 중 개정규정 요지

1. 개정이유

- 정원외인력정수 관리근거를 직제규정에서 정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직원을 구분하는 용어를 일원화하며 오기 등을 정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관(제22조제2항)에서 정원외인력정수관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조(정원외 인력정수) 삭제
- 직제규정제10조에서 직원을 일반직, 전문직, 전문위원으로 구분하므로 직제규정 제14조(정원)제1항과 용어 통일(제18조 및 제19조)
- 오기, 탈자 등의 정정(제17조 및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- 사장방침 제201호 「직제규정 및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」(2016.3.15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절 차 :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·시행

라. 기타참고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5조(정원외 인력정수) 임대주택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장은 정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7조(업무분장) 공사의 각 본부의 업무분장은 별표3과 같다.	제17조(업무분장) 공사의 각 본부의 업무분장은 별표3과 같다. <※ 조문개정없이 별표3개정>
제18조(권한과 책임) ① 모든 임·직원 및 전문직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. ②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그 범위는 시행내규로 정한다.	제18조(권한과 책임) ① 모든 임원 및 직원 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. ②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직원 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그 범위는 시행내규로 정한다.
제 19 조 (특명사항)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 및 전문직 이 사장으로부터 특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수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	제 19 조 (특명사항)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 이 사장으로부터 특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수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현 행>

<별표3(제17조 관련)>

업 무 분 장

부 서 별	업 무 분 장 내 용
건설안전본부	1. ~ 9. 생략

<개 정>

<별표3(제17조 관련)>

업 무 분 장

부 서 별	업 무 분 장 내 용
건설안전사업본부	1. ~ 9. 현행과 같음

◎ 규정 제640호

직제규정 개정

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5조를 삭제한다.
- 제18조제1항의 “임·직원 및 전문직”을 “임원 및 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의 “소속직원”을 “직원”으로 한다.
- 제19조의 “직원 및 전문직”을 “직원”으로 한다.
- 별표3을 첨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3(제17조 관련)>

업 무 분 장

부 서 별	업 무 분 장 내 용
기획경영본부	(생략)
주거복지본부	(생략)
도시재생본부	(생략)
공공개발사업본부	(생략)
택지사업본부	(생략)
건설안전사업본부	(생략)
SH도시연구원	(생략)
SH교육원	(생략)
감 사	(생략)